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대응조치

▶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, 피싱 사기범에게 **이체 · 송금, 개인정보 제공** 또는 **악성앱이 설치**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

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**즉시** 전화하여 **계좌지급정지 신청**(경찰청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)

이체 · 송금 피해가 있을 경우 실시

2 신분증, 계좌번호 등 **개인정보가 유출**되거나,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**악성앱 설치**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

2-1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

-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
- (악성앱 설치 시)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

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보드 전환

2-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

-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(pd.fss.kr)접속
- 이용약관,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
-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

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

2-3 내 계좌 지급정지(일괄 또는 부분) 신청

-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www.payinfo.or.kr)접속
- '내계좌 지급정지' 메뉴에서 은행권, 제2금융권, 증권사 클릭
-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(2중 인증)으로 본인 확인
-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

★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(전화)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

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

2-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

-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(www.masafer.or.kr)접속
-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
-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,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
-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,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
-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,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

3 경찰서(사이버 수사대)에서 발급한 **사건사고사실확인원**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**피해구제신청** 서면접수(신청일 3일 이내)

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

※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,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 · 재발급, 신분증 분실신고 등 **필요한 추가조치**를 실시

금융감독원